

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예비인가 신청서

1. 상호

■ **첨부서류**

1-1. 정관(안) 1부

1-2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※ 정관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

2.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(예정)소재지

■ **첨부서류**

2-1.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(예정)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

3. (선임예정) 대표자 및 임원

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유주식수 (비율)	주요 경력	상근 여부	담당 업무	전문인력 여부	임원자격 적합여부

기재상의 주의

1. 임원자격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19의3 제3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.

■ **첨부서류**

3-1. (선임예정)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각 1부

3-2.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4.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

■ **첨부서류**

4-1.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 1부

※ 법 제323조의7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.

5. 재무에 관한 사항

■ **첨부서류**

5-1.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) 1부

5-2. 자본금 납입확약서, 예금·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
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-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6-1.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1부

7. 인력,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
-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

- 시설계획(사무공간 배치계획, 전산설비 내역,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)

※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요경력, 전문자격내용 등)을 기재

■ 첨부서류

7-1.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1부

7-2. 사무공간,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1부

8. 대주주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8-1. 예비인가신청일(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)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
8-2.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9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9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
9-2.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
9-3.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10. 그 밖의 기재사항

■ 첨부서류

- 10-1. 청산업무규정(안) 1부
- 10-2.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
- 10-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
- 10-4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청산업무규정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

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2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